별첨2 직무관련 가산대상 자격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보건 및 통계 직렬)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대상 자격증	(보건)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 · 2급	(보건)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1급	(통계) 사회조사분석사 2급
서류전형 가산비율	5%	3%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보건 및 통계 직렬)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산업기사 상당
가산대상 자격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서류전형 가산비율	5%	3%